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10247
결재일자	2016.6.24.
공개여부	부분공개(5)

주무관	식품안전담당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	
박현미	차원경	김종호	06/24 황원숙		
협 조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품위생담당 정동헌</p>				

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 · 점검 계획

2016. 6.

**성북구보건소
보건위생과**

전통시장 내 식품판매업소 등 지도·점검 계획

식품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단속보다는 지도·계몽·교육 등 실질적 지원 위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식품판매 환경을 조성코자 함

1. 추진근거

- 2016년 식품안전관리지침 (식품의약품안전처)
- 2016년 전통시장 식품안전 관리 계획 (식품안전과-13666(2016. 5. 13.)호)
- 2016년 성북구 가공식품 안전관리 계획 (보건위생과-3753(2016. 3. 8.)호)

2. 전통시장 현황

- 2016년 전통시장 내역 (붙임 1 참고)

형태	개소	시장명
골목형	8	돈암, 장위전통, 석관황금, 정릉, 정릉아리랑, 밤나무골, 삼선골목, 장계시장
건물형	6	길음, 장위, 번동, 석관, 새석관시장

- 전통시장별 업소 현황

(2015. 10. 현재)

연번	시장명	총계	식품판매업소수		
			즉석판매제조·가공업	음식점	식품판매업(자유업)
	총계	341	234	42	65
1	길음	79	43	19	17
2	정릉아리랑	51	38	10	3
3	석관황금	95	57	10	28

4	돈암	42	37	0	5
5	장위전통	69	54	3	12
6	밤나무골	3	3	0	0
7	장계시장	2	2	0	0

3. 추진 계획

- 점검기간: 2016. 6. 27.(월)~2016. 6. 29.(수)
- 점검대상: 삼선골목시장 및 돈암시장 내 식품업소 약 60개소
 - 영업신고 업종 :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, 식품접객업 등
 - 식용유지 제조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 제외 (2016. 6. 점검완료)
 -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제외 (2016. 5. 점검완료)
 - 비영업신고 업종 : 소규모 슈퍼마켓(자유업) 등
- ※ 시장선정 기준
 - 서울시 점검 시장 제외(정릉시장) 및 골목형 중점
 - 작년 미선정 전통시장 우선 선정
- 점검자: 식품위생감시원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
- 점검방법
 - 점검표 양식에 따라 현장 지도·점검 실시
 -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하고, 주요 위반 사항 발견 시 식품위생감시원 재점검 후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치
- 지도·점검내용
 - 영업신고 업종
 - 기계·기구 및 음식기, 업소의 청결 상태
 - 무신고·무표시·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불량재료 사용 여부
 - 적법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
 - 식품의 표시기준 준수
 - 자가품질검사 대상의 경우 검사 이행 및 검사성적서 보관 여부
 -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 등

- 비영업신고 업종
 - 무표시·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
 -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자가 제조·가공한 식품 판매 여부
 - 제조·가공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개봉 후 분할 판매 여부
 - 적법한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

□ 홍보 및 계도 활동

- 식품표시기준이 취약한 전통시장 내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제작한 「식품 등 표지판」 배부
- 전통시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「전통시장 식품안전 위생관리 매뉴얼」 배부
- 영업자의 자율적인 식품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「업종별 자율점검표」 전달
- ※ 반기별 자율점검 이행 여부 확인

4. 사전 교육

- 일 시: 2016. 6. 27.(월) 10:00
- 장 소: 성북구 보건소 7층 보건위생과
- 대 상: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명
- 교육내용: 점검내용 숙지, 점검방법 및 유의사항 등

5. 소요 예산

- 소요예산: 50,000원(1일) X 3일 X 2명 = 300,000원
- ※ 서울시 예산으로 서울시에서 지급

6. 행정 사항

-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지도하고, 주요 위반 사항 적발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분조치
 - ※ 식품접객업소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내용 식품위생팀으로 인계
- 전통시장 식품안전관리 추진실적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청구서를 서울시 식품안전과로 제출

7. 기대 효과

- 식품안전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품 등 표지판 배부로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을 도모하고,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공정거래가 확보되도록 함
- 자율점검표 활용으로 영업자의 책임의식 향상과 자율적 위생상태 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위생 취약점 효율적 관리

- 붙임 1. 전통시장 현황 1부
2. 업종별 점검표 1부
3.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보고서 1부
4. 식품 등 표지판 1부
5. 전통시장 식품안전 위생관리 매뉴얼 1부
6. 업종별 자율점검표 1부. 끝.